|  |
| --- |
| **수 신** : 헤움디자인 대표이사 김 형 철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로 68 3층  **발 신** :    **제 목** : **헤움서체 무단사용에 대한 손해배상 요청에 대한 답변** |

1. 발신인은 귀 사의 헤움서체 무단사용에 대한 손해배상 요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우선 발신인은 발신인이 사용한 서체의 프로그램이 귀사가 저작권을 갖는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이고, 이를 라이선스 계약 없이 영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점을 알려주신 데 대해 고마움을 표하며, **이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희망**합니다.
3. 우선 발신인은 귀 사가 **비영리 – 무상사용 조건의 이용허락**에 따라 정당하게 귀 사의 프로그램을 설치하였으므로 **저작권법 상 복제권의 침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4. 발신인은 귀사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고의는 전혀 없었으며 현재 귀사의 폰트 프로그램도 모두 삭제한 상태입니다.
5. 귀사의 지적으로 발신인이 **귀사의 라이선스 정책 위반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게 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향후 귀사의 폰트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6. 그리고 이미 보내주신 **폰트 패키지 전체의 이용 허락과 관련된 견적서**는 실제로 발생한 손해액으로 인정할 수 없으니, **발신인이 사용한 폰트**로 인해 귀사에 **발생한 손해의 액수를 근거와 함께 정확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주신 손해액을 재검토 후 정당한 손해배상 요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발신인은 이를 지불할 용의가 있습니다.
7. 다만 실제 발생한 손해 액수를 넘어서는 **과도한 배상**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하지 않을 것이며, 귀사의 요청이 **형법상 공갈죄나 부당이득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따른 민형사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아울러 알려드립니다.
8. 한편 발신인의 프로그램 이용 행위가 **라이선스 정책 위반(채무불이행)을 넘어 귀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취지라면, 저작권 중 **어떤 지분권에 관한 침해 행위**인지 등 구체적인 근거를 회신 부탁 드립니다. 만약 귀사의 프로그램에 대한 복제권 침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향후 저작권 침해라는 표현이나 주장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9. 이미 서울고등법원은 아래와 같이 **비영리 사용 목적으로 설치된 프로그램을 영리적으로 사용한 경우 그 행위는 채무불이행 책임이 문제될 소지 외에 저작권(복제권) 침해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개별 사용자가 A 유료버전을 하드디스크에 설치할 당시 피고가 사용을 허락한 범위를 넘어서 A유료버전을 실행하여 사용허락계약의 범위를 벗어나 업무용으로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개별 사용자가 피고에 대하여 사용허락계약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별도로 하더라도 그와 같은 개별 사용자의 행위가 A 프로그램에 대한 복제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서울고등법원 2014. 11. 20. 선고 2014나19631 판결)*

1. 이상과 같이 답변 드리오니, 발신인이 요청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정중하게 요청 드립니다. 그리고 발신인은 귀사와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기를 희망한다는 점을 재차 알려드립니다.

2016. . .

발신인 (인)